

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:
	제주4·3사건재정립시민연대	사업자등록번호 : 302-80-21320
이의신청인	주소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42	전화번호 : 02-737-0403
	종로빌딩 6층	전자우편주소 : info@jeju43.kr

공개 또는 이의신청인이 정보공개 청구(접수번호 7731772)한 사항 전부에 대하여 귀기관에서 비공개 내용 부존재 또는 비공개결정을 하였으나 이는 위법부당합니다.

이의신청사유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
 정보(공개[] 부분 공개[] 비공개[]) 결정 통지서를 2021년 4월 29일에 받았습니다.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. ※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.

-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
1. 정보공개 및 이의신청의 취지 : 신청인은 제주4.3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체성과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일련의 사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태에 귀기관이 공무원의 사명을 다하여 주기를 촉구함과 동시에 주권자로서 관여하기 위함
 2. 이의신청 이유
 - 가.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: 진행 중인 재판이라 할지라도 정보공개 청구가 이해관계있는 주권자 국민이 소송참가를 목적으로 하는 등 공익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가 타당하며, 이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대한민국 편에서 직무수행을 보조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는 부당함
 - 나. 부존재 결정에 대하여 : 법무부 소관업무가 아니라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에 의거하여 해당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유 등을 문서로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존재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고, 법무부가 지휘감독하고 있다는 국가배상사건에 대해서 소송수행자를 파악 못하고 있지 않음에도 부존재처리하고 소송수행청으로도 이송하지 않은 행위는 당연히 위법부당함
 - 다. 불복절차 통지의무 위반 등 : 비공개 결정의 경우 불복절차를 통지해야 할 의무(동법 제13조 5항)를 위반했고, 결정내용 통지 근거조문으로 13조1항 4항을 적시하여 공개결정한 것처럼 하고 내용은 비공개, 부존재 결정을 하는 등 대국민행정에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

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2021년 5월 24일

제주4·3사건재정립시민연대 (서명 또는 인)

이의신청인

(접수기관) 법무부장관 귀하

제주4·3
 사건재정립
 시민연대인